
II. 그룹단위감독의 필요성

1. 금융그룹의 정의

가. 금융그룹의 일반적 정의

- 금융그룹이란 일반적으로 “공동의 지배” 아래 있으면서 “서로 다른 금융업을 영위”하는 금융회사의 집단을 말함.¹⁴⁾
 - 여기서는 유럽과 미국의 금융그룹 감독체계에서 금융그룹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여 고찰함.

- 유럽에서는 금융그룹(financial conglomerate)을 금융업 인가¹⁵⁾를 가진 회사가 모회사인 그룹 또는 그룹의 자회사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회사가 금융업 인가를 가진 그룹으로 정의하고 있음(EU 금융그룹지침 2장 14조(a), 2002).
 - 그룹이란 모회사, 자회사, 모회사 및 자회사가 20% 이상의 지분을 가진 회사, 그리고 그 밖에 연결기준에 포함되는 회사 등을 포괄함.
 - 특히 비규제회사가 모회사인 경우,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아우른 그룹 전체 대차대조표상 자산 중 금융업의 비중이 40% 이상이어야 함.
 - 규제회사는 은행, 금융투자업, 또는 보험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를 의미함.

14) 송옥렬(2010).

15) 여기서 금융업 인가를 가진 회사는 각 금융권역을 규율하는 지침에 따라 생명보험, 손해보험, 금융투자, 은행 인가를 받은 회사를 의미함.

- 또한 EU 금융그룹지침은 금융그룹이 반드시 보험업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여야 하고, 은행과 금융투자업을 합한 비중과 보험업의 비중이 각각 10%를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.
 - 따라서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같이 은행업이 지주회사 전체 자산의 90%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유럽에서는 금융그룹으로 간주되지 않음.

- EU 금융그룹지침은 이들 금융그룹에 대해 그룹단위감독을 개별기업 감독과 보완적으로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(5장 보완적 감독의 범위).
 - 보완적(complementary) 감독이란 그룹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개별 금융업법에 의한 감독(solo supervision)을 그룹단위감독을 통해 보완한다는 의미를 가짐.
 - 보완적 그룹감독의 범위에는 모회사, 자회사, 그리고 연결기준의 모든 관련회사가 포함됨.
 - 이러한 그룹에 대한 보완적 감독은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 적정성, 리스크 집중, 그룹 내부거래,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절차 등이 포함됨.

- 미국에서 금융그룹은 1999년 금융현대화법¹⁶⁾에 따라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은행지주회사가 다양한 금융업종의 금융자회사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한 금융지주회사를 의미함.
 - 금융현대화법에 따라 1933년의 글래스·스티걸법¹⁷⁾과 1956년의 은행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지되어 왔던 은행의 금융투자 및 보험관련 업무가 금융지주회사(financial holding company)를 통해 가능해짐.
 -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으려면 자본 상태(well-capitalized)와 경영 상태

16) Gramm-Leach-Bliley Act of 1999는 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Section 4의 확장을 통해 financial holding company를 통한 은행의 금융투자업, 보험업 등 업무영역 확장을 가능하게 하였으며, 이 밖에 기능적 규제,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.

17) 1933년 은행지주회사법의 20장과 32장을 폐지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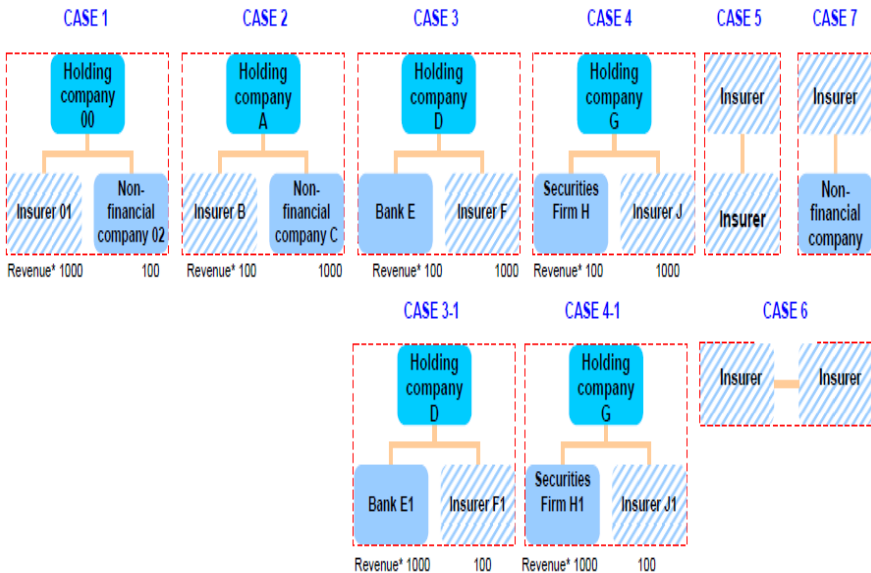
(well-managed)가 양호하고, 지역재투자법(CRA) 평가에서 만족(satisfactory)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.

- 금융지주회사는 직접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법에서 정한 금융업무(financial in nature) 및 부수업무(incidental to such activity)의 영위가 가능함.
 - 금융 및 부수업무는 상업은행 및 투자은행 업무와 보험업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금융검영을 폭넓게 허용함.

나. 보험그룹의 일반적 정의

- IAIS는 보험핵심원칙 23장 그룹단위감독에서 둘 이상의 회사 중 적어도 한 회사가 보험회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보험그룹을 정의하고 있음.

〈그림 II-1〉 IAIS의 보험그룹 예시



자료: 그림 23.1, 보험핵심원칙(Insurance Core Principles) 23.2.4.

- IAIS는 2011년 10월 서울 총회에서 채택된 보험핵심원칙(ICPs: Insurance Core Principles)에서 보험그룹을 정의함.
- IAIS는 <그림 II-1>의 Case 7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그룹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음.
 - Case 1~Case 4까지는 지주회사 형태의 보험그룹
 - Case 5~Case 6은 모·자회사 형태의 보험그룹

■ 그룹감독의 대상인 보험그룹에는 모든 관련회사들¹⁸⁾이 포함되며, 보험회사와의 연관성을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(ICP 23.2).

- 영업 및 비영업지주회사: 중간지주회사 포함
- 보험회사: 자매회사 또는 자회사
- 은행 및 증권회사와 같은 다른 금융권역의 회사
- 규제 및 감독을 받지 않는 관계회사(이하 비규제 회사): 모회사, 자회사 및 그룹 내 회사가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회사 포함
- 특수목적법인

다. 국내 금융그룹 및 보험그룹

■ 우리나라의 금융그룹은 크게 금융지주회사와 모·자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, 은행그룹은 모두 금융지주회사의 형태를, 보험을 비롯한 비은행그룹은 주로 모·자회사의 형태로 기업집단 계열에 속해 있음.¹⁹⁾

- 모·자회사 형태의 금융그룹의 경우, 금융회사 단위의 권역별 감독만을 받고 있으며, 금융지주회사의 경우, 금융지주회사법의 의한 감독을 받고

18) 본 보고서에서 관련회사란 보험그룹에 리스크를 미칠 수 있고 이에 따라 그룹단위 감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회사를 의미함.

19) 은행지주회사는 모두 금융지주회사 형태이며, 비은행지주회사로는 보험지주회사인 메리츠금융지주와 금융투자지주회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있음.

는 있으나 그룹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감독하는 그룹단위감독은 아님.

- 국내 보험그룹도 크게 보험지주회사와 모·자회사의 형태를 가지나 현재 보험그룹으로서의 규제는 보험지주회사만 받고 있음.
 - 메리츠금융지주가 보험을 주된 자회사로 갖는 유일한 보험지주회사이나, 넓은 의미에서 우리금융지주 등 여타 은행지주회사도 모두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가지는 보험그룹으로 볼 수 있음.
 - 모·자회사 형태의 보험그룹은 대기업집단 소속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다수 존재함.
 -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법의 경우, 개별 회사단위 감독만 규율할 뿐 보험회사가 금융그룹의 일부인 경우 등 그룹감독의 개념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.

1) 금융지주회사 형태의 금융그룹

-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부터 「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(이하 공정거래법)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기 시작하였음.
 - 1999년 지주회사 설립 허용 전까지는 1986년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대기업의 선단식 경영 및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설립과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금지한 바 있음.²⁰⁾
 -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기업집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를 통한 외자유치를 위해 19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지주회사가 허용됨.

20) 공정거래법은 1986년 12월 31일 제1차 개정 시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금지(제7조의2), 상호출자의 금지(제7조의3), 출자총액의 제한(제7조의4), 금융·보험사의 의결권제한(제7조의5) 등과 같은 경제력 집중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항들을 신설함.

-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관련하여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 감독 및 투자자 보호 등의 문제를 담음.
 - 제정 당시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이었던 금융지주회사법은 2009년 개정으로 공정거래법과 분리됨(김홍기 2010).
 -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 등을 통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주안점에 두고 일반지주회사를 규율하고,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업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순수지주회사인 금융지주회사를 규율하는 체계가 마련됨.
 - 금융지주회사에 관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따름(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).

-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를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회사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음(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).

〈그림 II-2〉 국내 지주회사 근거법

	사업지주회사	금융지주회사	개별 금융회사
금융업	공정거래법 개정안	금융겸업	-
제조업	-	금융지주회사법	금산법

- 지배란 회사가 단독 또는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계열사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것을 의미함.
- 주된 사업이란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1/2 이상인 것을 의미함.
- 또한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, 하나 이상의 금융회사를 지배해야

하며,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.

-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영역을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 부수업무²¹⁾로 한정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는 금지함으로써 순수지주회사만을 인정하고 있음.

■ 금융지주회사법은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를 보험지주회사로 정의함(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6의3호).

- 여기서 비은행지주회사란 은행을 포함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이며, 은행을 포함하여 1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와 구분됨.
- 비은행지주회사는 다시 보험지주회사와 금융투자지주회사로 나눌 수 있음.
 - 금융투자지주회사는 은행과 보험회사를 포함하지 않고 금융투자회사를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금융회사를 지배함.
- 즉,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 은행을 포함하면 은행지주회사, 은행 없이 보험회사를 포함하면 보험지주회사, 은행과 보험회사 없이 금융투자회사를 포함하면 금융투자지주회사로 정의함.

■ 보험지주회사 역시 순수지주회사이어야 하지만, 은행지주회사와 달리 제조업 등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²²⁾가 적용됨.

-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전산·정보처리, 금

21) 자회사의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는 사업목표 부여 및 사업계획 승인,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, 경영지배구조의 결정,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등을 포함하고 자회사의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는 자금지원, 출자 또는 자금지원을 위한 조달, 공동상품의 개발 및 판매를 위한 사무지원과 전산, 법무, 회계 등 업무지원을 위해 위탁받은 업무 등을 포함함.

22) 시스템리스크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있어 비은행지주회사와 은행지주회사의 차이를 인정하여 2009년 법 개정 시 반영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규제수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함(금융위원회 2008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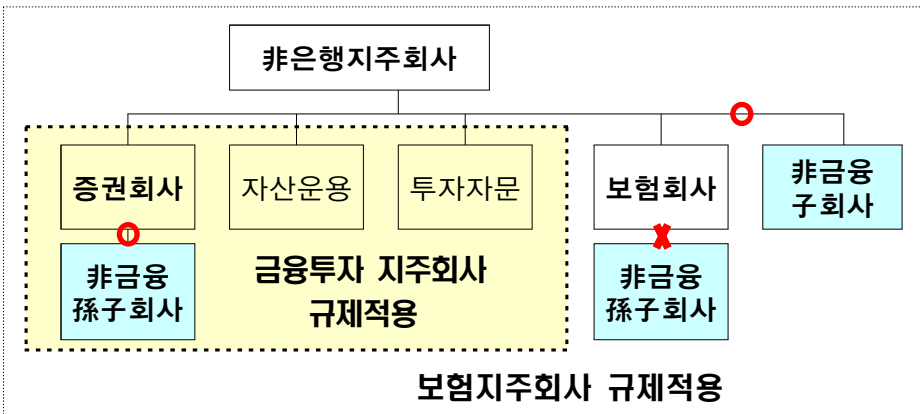
용기관 보유 자산관리, 금융업관련 조사 및 연구 등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자회사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.

○ 그러나 2009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보유 등을 허용하였음.

■ 이에 따라 보험지주회사도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, 보험회사가 아닌 금융자회사를 통해서도 비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도 거느릴 수 있음(〈그림 II-3〉 참조).

- 하지만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자회사를 통한 비금융자회사에 대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자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보유는 금지함.
- 또한 공정거래법 상의 자회사주식보유기준²³⁾을 따라 상장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비금융자회사는 20%, 비상장 비금융자회사는 40%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함.

〈그림 II-3〉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보유



자료: 금융위원회(2008).

23)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제2호.

- 또한 일반지주회사가 중간금융지주회사 형태로 보험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(안)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며²⁴⁾ 중간지주회사는 최근 금산분리 논의과정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음.

○ 개정안은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지배 또는 지배하는 금융회사 자산규모의 합이 20조 원 이상인 경우,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두도록 하였음.

- 현재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2012년 12월 현재 12개 금융지주회사가 영업활동 중임(〈표 II-1〉 참조).

〈표 II-1〉 국내 금융지주회사 현황(2012년 12월 현재)

지주회사명	자본총액 (십억 원)	자/손/증손회사 수(상장회사)					
		자회사(상장)	손자회사(상장)	증손회사(상장)			
신한금융지주	28,780	13	1	18	0	0	0
KB금융지주	24,704	10	0	10	0	0	0
우리금융지주	23,003	12	2	64	0	0	0
하나금융지주	20,374	10	1	23	1	4	0
산은금융지주	24,807	5	1	36	0	0	0
한국씨티금융지주	6,106	3	0	1	0	0	0
한국스탠다드차타드 금융지주	5,771	5	0	0	0	0	0
BS금융지주	3,225	6	0	0	0	0	0
DGB금융지주	2,523	5	0	0	0	0	0
메리츠금융지주	1,700	7	2	3	1	0	0
한국투자금융지주	2,550	7	0	14	0	2	0
농협금융지주	17,259	7	1	5	0	0	0

자료: 공정거래위원회(2012); 금융감독원 전자공시(2013); 산은지주경영공시(2013).

24) 18대 국회의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되었으나 최근 금산분리 논의 과정에서 다시 주목 받고 있음.

- 메리츠화재가 주축이 된 메리츠금융지주회사가 2011년 3월 최초의 보험지주회사로서 인가를 받음.²⁵⁾
- 이 밖에 8개의 은행지주회사, 2개의 지방은행지주회사, 그리고 1개의 금융투자지주회사가 영업 중에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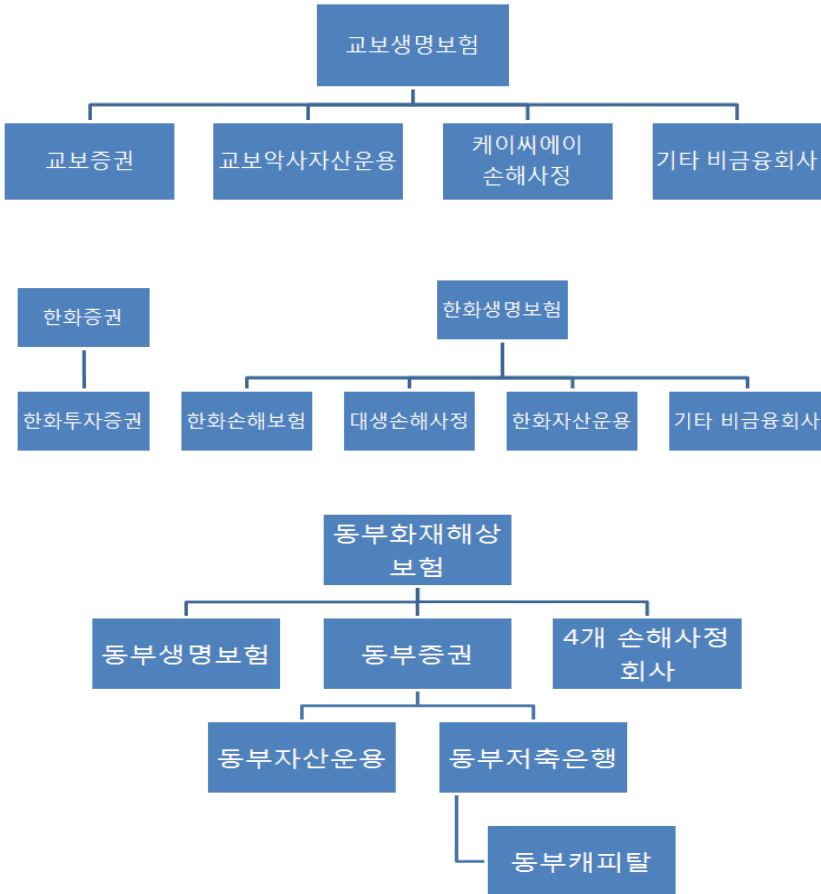
2) 모·자회사 형태의 금융그룹

- 금융지주회사 형태 외에도 금융그룹은 모·자회사 관계로도 나타날 수 있으며,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보험 및 기타 금융회사의 소유는 넓은 의미에서 금융그룹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.
 - 모·자회사 형태의 금융그룹의 예로는 <그림 II-4>의 교보생명보험을 정점으로 한 보험그룹, 한화생명보험²⁶⁾ 중심의 보험그룹, 그리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중심의 그룹을 들 수 있음.
 - 이들 모·자회사 형태의 보험그룹은 주로 산업자본이 대주주를 형성하며, 예를 들면 한화생명은 한화건설과 한화가 대주주로서 한화생명의 지분을 각각 24.88%와 21.67% 씩 소유하고 있음.
- 모·자회사 관계로 나타나는 금융그룹의 경우 주로 공정거래법의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와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개별 금융업법을 통한 건전성 규제를 받으나 금융그룹으로서의 감독은 받고 있지 않음.
 - 이들 모·자회사 형태의 금융그룹은 대규모 기업집단 내의 순환출자 등으로 얽힌 소유지배구조의 일부로 전체 기업집단의 그룹구조는 보다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음.
 - 상호출자제한 등 공정거래법상의 대기업집단 규제는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라기보다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산업규제의 성격이 강함.

25) 금융위원회(2011).

26) 2012년 6월 회사 명칭을 대한생명보험에서 한화생명보험으로 바꿈.

〈그림 II-4〉 모·자회사 형태의 보험그룹



2. 그룹감독의 필요성

- 금융그룹 구조도 다른 조직체계와 마찬가지로 장·단점을 함께 가지며, 금융그룹은 그 운영여하에 따라 장점이 부각되어 금융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, 단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금융시장에서 결국 퇴출될 수도 있음.
- 금융그룹의 장점은 큰 조직의 이점인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, 시장 상황에 따라 진입과 퇴출을 비교적 쉽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임.

- 또한 조직 내의 분업을 통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, 단순화된 소유 지배구조를 통해 투명성이 향상되어 모니터링이 용이해지는 장점도 있음.
- 금융그룹 구조가 갖는 단점으로는 금융그룹 내부에서 리스크의 집중과 전이가 일어날 수 있으며, 금융그룹 내 회사들의 이해당사자 간 이해상충문제가 있음.
 - 여러 단계의 자회사 지분소유과정에서의 경제력 집중도 제어가 되지 않을 경우 그룹구조가 갖는 단점이 될 수 있음.
- 이러한 금융그룹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금융그룹 전체에 대한 그룹단위에서의 규제 및 감독이 필요하며, 이는 금융위기를 거치며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음.
 - 즉, 그룹단위 감독자와 각 자회사 감독자 사이에 유기적인 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한 금융그룹 리스크의 사전적인 모니터링은 금융그룹의 단점 극복을 위해 중요함.

가. 금융그룹 구조의 장점

- 1) 규모 및 범위의 경제와 용이한 진입과 퇴출
- 금융그룹 또는 금융지주회사는 정보기술과 고객정보 공유 등을 통해 사업의 외형성장 및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개별 금융회사에 비해 유리함.
 - 금융지주회사는 공동광고, 전산시스템, 사무 공간, 영업점 및 전산자료 저장 설비와 정보통신망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.
 - 또한 금융지주회사는 그룹 내에서 금융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와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.
 - 단, 고객정보관리인을 선임하여 동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함.²⁷⁾

-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고,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관련 자회사의 임직원도 다른 자회사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음.²⁸⁾
 -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이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 그 자회사 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다른 자회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²⁹⁾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시험할 수 있음.
 - 금융의 각 권역을 포괄하는 신상품의 개발과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용이하게 하여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함.
- 지주회사는 특정 사업에 진출하거나 사업에서 철수하기가 용이하여 시장 상황에 맞추어 순발력 있는 대응이 가능함.
- 자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의 주식 인수를 통해 기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부문에 진출하기가 용이함.
 - 사업성고가 안 좋은 경우에는 주식매각 또는 청산을 통해 자회사를 정리함.

2) 경영효율성 제고와 투명성 향상

-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및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경영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.
- 지주회사는 일상적 영업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, 후선업무의 효율성도 제고가 가능함.³⁰⁾

27)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(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) 및 시행령 제27조의2(고객정보의 취급방침).

28)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.

29)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.

30)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를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 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순수지주회사만을 허용함(금융주주회사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).

- 한편 자회사는 고유사업모형에 전념하여 지주회사 차원의 경영효율성 개선이 가능함.
- 기존의 계열사 간 출자 관계와 같은 소유지배구조가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단순해지고 이에 따라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지배구조의 개선이 용이해짐.
 - 이로 인해 감독당국 및 이해관계자들의 금융그룹 및 경영진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용이해짐.

나. 금융그룹 구조의 단점

1) 경제력 집중 우려

- 지주회사는 소규모의 자기자본으로 여러 단계의 자회사 지분소유를 거치는 방식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의 확장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없을 경우 경제력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.
 - 이에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타인자본에 의한 자본조달을 제한하고, 최소한의 자회사 지분투자 비율을 명시하기도 함.
- 금융그룹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, 특히 산업자본의 보험·금융회사 소유를 통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하여 비금융지주회사의 행위를 다양하게 규제하고 있음.
 - 국내 금융지주회사법 역시 보험지주회사 등이 자본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.³¹⁾
 -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사를 보유하는 경우, 비금융자회사가 상장 또는 공동출자법인일 경우는 20%, 비상장법인일 경우는 40% 이상의 주식

31) 금융지주회사법 제35조(비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).

을 보유하도록 함.³²⁾

- 비은행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가 비금융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.
- 일반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자회사의 지분을 상장 또는 공동출자법인의 경우 30%, 비상장 자회사의 경우 50%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있고³³⁾ 자회사의 손자회사 보유도 동일 기준을 적용함.

2) 리스크의 집중 및 전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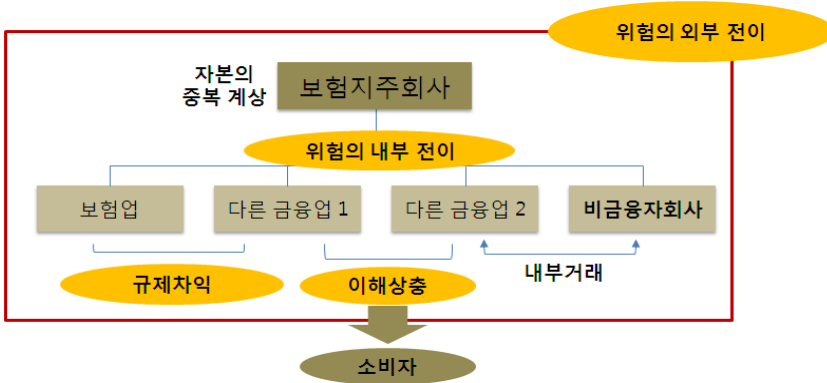
- 금융그룹 내 개별 금융회사가 안고 있는 집중리스크³⁴⁾는 크지 않더라도 금융그룹 전체의 집중리스크는 커져 그룹 전체의 부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 - 따라서 개별회사 차원의 리스크 집중과 함께 금융그룹단위에서의 리스크 집중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.
- 금융그룹에서는 한 자회사의 부실이 다른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로 전이되어 그룹 전체가 부실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함.
 - 자회사 간의 신용공여, 주식보유, 금융상품 거래, 보증 등의 관계를 통하여 한 자회사의 재무적 부실이 다른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로 전이됨.
 - 또한 한 자회사의 부실이 금융그룹 전체의 평판을 저하시켜 실제 재무적 부실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금융그룹의 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음.

32) 금융지주회사법 제20조(비금융회사 지배의 특례), 공정거래법 역시 제8조의2 제2항에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자본 총액의 200% 이내로 제한하고,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지분을 상장 자회사 20%, 비상장 자회사 40% 이상 보유하도록 함.

33) 금융지주회사법 제43조의2 및 3(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).

34) 신용공여, 금융상품의 거래, 보증 등이 거래상대방 한 곳에 집중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뜻함.

〈그림 II-5〉 금융그룹이 노출되는 위험



- 보다 거시적으로는 금융그룹의 부실이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고 실물 경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해야 함.
 - 시스템리스크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그룹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또 다른 이유이며, 현재 보험그룹의 시스템리스크 감독도 논의 중에 있음.
 -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(IAIS)와 금융안정위원회(FSB)를 중심으로 보험 권역의 시스템리스크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의 지정 및 감독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.
 - 보험그룹의 비전통비보험(NTNI: Non Traditional Non Insurance) 영업이 시스템리스크를 높인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음.
 -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문제가 된 AIG 그룹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금융투자부문의 자회사였던 AIGFP³⁵⁾의 부실이 그룹 전체의 부실로 전이되어 구제금융을 받는 사태를 초래하였음.³⁶⁾
 - 다만, 보험그룹이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는지 또는 단순히 증폭시키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통일된 견해가 없음.

35) AIG Financial Product.

36) 임준환·유진아·이경아(2012).

- 또한 은행과 다른 사업모형으로 인하여 보험그룹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판단하는 요인의 가중치는 은행과는 다름(IAIS 2012. 5).
 -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그룹(G-SIIs)의 선정에는 규모, 상호연관성, 대체가능성, 국제성, 비전통비보험(NTNI) 영업활동 등이 고려됨.

3) 이해 상충

- 금융그룹에서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또는 자회사 간에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며, 이는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각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이해상충을 초래할 수 있음.
 - 특히,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% 소유하지 못하는 불완전 자회사의 경우, 그룹 전체의 이해와 불완전 자회사의 소수 주주 사이에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.
- 조직구조 측면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경영상의 권한과 책임의 상충으로 의사결정 및 경영지원에 있어 비효율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.
 - 지주회사 경영진과 자회사 경영진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, 회사 운영에서 비효율이 초래되어 지주회사 조직형태를 통해 기대되었던 경영효율성 향상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음.
 - 특히,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통제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, 이러한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.